

“중소 수출입기업과 함께하는”

서울본부세관 **중소기업**
SEOUL Main Customs

주요지원사업



서울본부세관
SEOUL Main Customs

서울본부세관
SEOUL Main Customs



CONTENTS ●●●●●●●●

01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07 해외 전시품 ATA
까르네 프로그램

02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프로그램

08 수입세금 환급
프로그램

03 FTA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09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프로그램

04 FTA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프로그램

10 해외 신속통관지원
프로그램(AEO)

05 수출 화주직접신고
프로그램

11 외국환거래법 상담
프로그램

06 전자상거래업체
수출지원 프로그램



기업지원센터 블로그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OI



혜택

수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 운영

- 세관직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FTA활용, 수출통관 등 수출종합컨설팅 지원
- 운영방법 : 2~3인 1조 방문 원칙, 필요시 공익관세사 동행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2, 1383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 FTA 원산지증명서 특혜 보류 등 해외통관애로의 적시 해소 지원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통관, 관세 납부유예 등 연계 지원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1389

공익관세사 무료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통관·FTA·환급 등 관세행정 종합컨설팅 제공
- 운영방법 : 유선, 방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센터 현장 컨설팅(매주 화·목)

문의 공익관세사 ☎ (02)510-1399

FTA 전문인력 교육 | <http://www.yesftaedu.or.kr>

- 중소기업 실무자,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관리인력 양성
- 운영방법 : 교육기간은 매년 3월~11월까지이고 전액 무료로 운영
※ 자세한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YES FTA 교육지원센터 ☎ 1544-5702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 민간 컨설턴트(관세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지원
※ '21년도 계획은 추후 공지 예정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5, 1380

02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프로그램



관세청 유튜브



관세청 FTA포털



개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혜택

협정	인증前	인증後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 서명 생략(전자문서 이용 가능)
한 EU 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유로 초과물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유로 초과물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종류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범위	모든 협정, 모든 생산·관리물품	특정 협정 및 품목번호 6단위 물품
유효기간	5년	5년
혜택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특정 협정의 인증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절차

인증신청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기타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서면심사	필요시 보정요구 또는 현지확인
인증서 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인증유효기간 5년
인증변경신고/수리	변경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변경신고대상(상호·대표자성명·주소·원산지관리전담자 등) - 기업의 합병·분할시 새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만료일 30일전 연장신청

FTA 인증·C/O 상담센터 운영

- 신청**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FTA 인증·C/O 상담센터'
 YES FTA 포털사이트 : 좌하단 '서울세관 FTA 인증·C/O 상담센터' 배너
- 문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4과 ☎ (02)510-1888



관세청 유튜브



관세청 FTA포털

FTA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03



사업목적

수출 상대국에서 FTA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



지원대상

수출자 및 생산자는 계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 기관발급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주요내용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대한민국 증명서 발급 기관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신청 및 발급신청

세관발급신청



FTA 인증·C/O 상담센터 운영

인터넷 상담신청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FTA 인증·C/O 상담센터
문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4과 ☎ (02)510-1864

04

FTA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프로그램



관세청 FTA포털



사업목적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세관에서 방문하여 사전 확인·점검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



확인사항

-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제조과정,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
- 원재료 공급망 등 원산지 관리시스템 전반 점검
-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적정성 확인



사업절차



문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 (02)510-1579



관세청 유튜브

수출화주 직접신고 프로그램

05



개요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화주는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신고할 수 있음



사전준비

통관고유부호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관고유부호(사업자등록번호와 유사한 수출자 구분코드) 신청하기 - 유니패스에서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유니패스 회원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 가입하기 - 웹사이트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
신고인 부호 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인 부호를 부여받아야 수출화주가 직접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할 수 있음 (일련번호 5자리 생성) ※ 신고인부호 문의 : 서울세관 수출과 ☎ (02)510-1146



수출신고 절차

유니패스 로그인	https://unipass.customs.go.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작성 경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서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공통사항1,2 및 관사항 입력 (참고 : Home ▶ 고객센터 ▶ UNI-PASS매뉴얼 ▶ 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매뉴얼) * 전자상거래수출 간이신고 방법 : 공통사항(1) ▶ 기본신고사항 ▶ 신고구분 항목 'E'로 설정 시 항목 간소화 (57개항목 ▶ 27개항목)
신고서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작성 완료 ▶ 미리보기를 통해 작성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 일괄자정(임시문서함 저장) ▶ 신고서 전송 후 오류가 통보되면 수정한 후 재전송하거나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1544-1285) ※ 신고서와 첨부서류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관세법)
첨부서류 사후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송된 수출신고서는 자동수리, 심사, 검사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 신고서 전송 후 서류제출* 방법 : Home ▶ 전자신고 ▶ 첨부서류 사후제출 * 서류심사에 선별되었을 경우, 전자서류 제출
세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서는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전송(신고수리 전까지는 물품소재지에서 반출 불가) 관할세관 수출부서에서 접수하여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진행



사후절차

수출이행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의무(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출정정·취하

- 잘못 기재된 수출신고서의 내용을 정정(기간 연장 포함)하거나 주문취소 등으로 취하
- 정정·취하 신청 경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수리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 정정신청 후 서류심사 선별된 경우, 정정·취하 증빙 전자서류 제출

문의 서울세관 수출과 ☎ (02)510-1147



배 경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 제도(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융 지원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신고를 간소화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



요 건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란 사이버몰을 이용해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로 신고한 업체
- 전자상거래 대상 물품*으로 수출물품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인 물품

* 아생동물보호법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관세법 제226조 세관장확인대상), 계약상이 수출, 재수출 조건부 수입통관 후 수출 등은 전자상거래수출 간이신고 대상 제외(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제35조의2)



혜택 및 효과

- 수출신고 항목의 대폭 축소(57개 기재 항목 ▶ 27개 항목만 기재)
- 관세 환급
 - 국내제조물품이 아닌 수입원상태 수출 시 거래구분코드를 72로 입력해야 환급 가능
- 부가세 영세율
-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 일괄 등록 가능(50~100건의 엑셀파일 자료를 일괄적으로 변환하여 한 번에 등록)

전자상거래 수출 문의 서울세관 수출과 ☎ (02)510-1145





대한상공회의소

해외 전시품 A.T.A. 가르네 프로그램

07



사업목적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



주요내용

A.T.A.가르네를 이용하면 수입국에서의 관세, 부가세 및 담보금 등을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 가능

적용대상물품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품

적용제외물품

-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 목적 물품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

협약국

- 미국, 유럽 등 전세계 79개 국가
- * 주요 비협약국 : 베트남, 필리핀,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대다수 아프리카국가



통관절차

A.T.A.가르네(증서)와 선적서류를 세관 수입/수출담당과에 방문제출



세관심사 후 신고수리(증서가 수입/수출신고필증 가능)

* 여행자 휴대반출 반입인 경우 현품, 여권, A.T.A. 가르네증서로 세관에 신고의사 표시

증서발급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팀 : ☎ (02)-6050-3303 (<http://cert.korcham.net>)

문의 서울세관 ☎ 수입과 (02)510-1152, 수출과 (02)510-1144

08

수입세금 환급 프로그램



관세청 유튜브



관세청 홈페이지



사업목적

중소 수출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일정금액 등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기업 지원



주요내용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 확인만으로 환급하는 방법

개별환급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소요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확인하여 환급하는 방법

환급신청기간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서류

환급금 계좌등록 시 제출서류

- 환급금 계좌통보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계좌통장사본

환급신청 시 제출서류(간이 정액 환급)

- 환급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 제조사실 입증서류

문의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 (02)510-1360/1362~1365



관세청 유튜브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 프로그램

09



사업목적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사전 확인 받음으로써 과다 환급으로 인한 추징이나 과소 환급 예방



지원대상

개별환급 대상 수출업체 / 개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업체



주요내용

- 환급 신청 전에 소요량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세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소요량 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
-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1년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요량 사전심사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간이한 절차로 진행



지원절차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 소요량 계산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소요량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



세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현지 확인시 50일) 이내에 소요량 계산 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사 신청 가능

문의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 (02)510-1367~1369

IO 해외 신속통관지원 프로그램(AEO)



관세청 홈페이지



사업목적

세관당국은 국제 공인기준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공인하여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현지 신속통관과 각종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



주요내용

- AEO 공인 대상 업체는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기준 충족 필요

법규준수	결격사유,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 준수 여부, 시스템 법규 준수수 확인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 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평가
재무건전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및 재정상황 확인
안전관리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도록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 장비, 정보기술, 교육, 훈련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 평가

- AEO 업체는 심의 결과에 따라 A, AA, AAA 로 분류
- AEO 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이며 갱신 가능



지원절차

- 공인심사 및 예비심사(공인심사 신청 전에 공인준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컨설팅 지원

AEO컨설팅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1/1385~1388



관세청 유튜브

외국환거래법 상담 프로그램

II



사업목적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법 통합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미한 외환절차위반을 방지하고자 외환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원대상

중소 수출입기업



주요내용

- 외국환거래법 상담 및 단순 절차 위반 등 자진신고 창구 운영
 - 신생 수출기업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위반 유형 안내
- 사례를 통해서 알아본 10가지 주요 위반 유형 예시

위반유형	위반사례
채권 채무상계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A사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 지분을 처분하면서 해당 주식을 비거주자인 채권자 37개사의 채권과 상계하였으나,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음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수령	국내 A사는 홍콩 현지법인에 10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적 전 100만 달러를 수령하고, 6개월 후 수출 이행
제3자에 대한 지급	미국의 A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A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



관련 문의

외국환거래법 상담문의 서울세관 외환 Help Desk ☎ (02)510-1710~1

자진신고 창구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 (02)510-1706~8



서울본부세관 **중소기업**
SEOUL Main Customs

주요지원사업



서울본부세관
SEOUL Main Customs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동 71)
TEL 02-510-1114 FAX 02-548-1381